

공 원 별	종 별	사 용 기 준	금 액(원)	비 고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 관 략 료	어 른 1회당	500	
		청소년 1회당	400	
		어린이 1회당	300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 사 용 료	주 간 1회당	40,000	야간은 주간의 2배
남 산 공 원	식물원 관람료	어 른 1회당	300	1시간 기준, 1시간 초과의 경우에는 매 30분마다 기준요금 추 가
		청소년 1회당	200	
		어린이 1회당	100	
	차량 통행료	버스, 대형화물	700	
승용 또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500		
		이륜 또는 소형 화물	300	

㉞ ○단체는 기본요율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인하 조정할 수 있음.  
 ○어린이 : 만 4세 이상 12세 이하 ○어른 : 19세 이상  
 ○청소년 : 만13세 이상 18세 이하 ○단체 : 3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

[별표 6]

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제26조 관련)

구 분	서울특별시	자 치 구
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자연공원</li> <li>○ 묘지공원</li> <li>○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도시 계획구역권, 광역권)</li> <li>○ 면적 10만㎡ 이상의 체육공원</li> <li>○ 공원관리사업소가 설치·관리하는 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공원</li> <li>○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근린 생활권, 도보권)</li> <li>○ 면적 10만㎡미만의 체육공원</li> <li>○ 기타 지목상 공원 등 소규모 공원</li> </ul>
녹 지	○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 완충 녹지	○ 시 관할 녹지이외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총괄부분)

○ 주택 등의 매매·이전시 수도요금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요금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근거, 수도기술연구소의 먹는물 수질검사기능 보완,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직결급수체계에 따른 관련규정의 신설,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및

검침 기능직 공무원들이 구성된 설립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마련 등과 관련한 개정 안임.

(세부사항)

○ 안 제5조(권리의무)에서 현행 조례규정에 의한 3월의 체납분을 승계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분리 고지가 가능토록 개정한 것은 일반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제7항의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토록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 되어 있고, 또한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액공사비를 형평에 맞게 부담하기 어렵고, 세수를 확보하기도 곤란할 것임. 그러므로 소출수지역은 물론 수도물 공급을 위한 인입관 공사비는 수도물을 생산·관리·판매하는 자가 부담토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임.

- 안 제18조제2항의 급수제한, 정지의 결과 급수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생길 경우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은 독점공급자의 횡포로 생각되며, 서울시가 각종 수도공사 또는 정기점검으로 인하여 단수·정수된 경우에는 사전홍보·고지 등 시민에게 알리고 있어 피해가 없도록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과 관리소홀로 불의의 사고시 이에 따른 정수·단수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9조의 제2항3호는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관로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분리 사용토록 조례화함이 필요하다고 봄.
- 안 제39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하는 상수도요금에 관련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청이 각 수도사업소이므로 이에 대한 민원을 각 수도사업소가 처리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며, 제44조의 이의신청은 각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제39조도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불과해 상급행정청인 상수도사업본부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안 제46조(계량기 점검 등 업무위탁)는 상수도업무의 일부인 검침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기능직(검침)공무원이 퇴직후 설립하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조항이 제2항의 단서에 신설된 것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본부의 애로사항으로 이해되나 자율경쟁이라는 차원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수도요금의 급수종별 구분표를 보면 대중목욕탕용이 가장 저렴하여 시민에

게 값싼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는 이해하나 목욕탕용 수도는 수도물로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는 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별표 2]의 나. 급수종별 구분표 (1)가정용 (나)항에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이 들어 있어 이를 영업용으로 전환하고, (3)업무용 (다)시립위탁시설 (차)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은 대중목욕탕용으로 이전시켜 어려운 복지시설에 최소한의 지원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4)영업용 (파)항의 미장원이 제외된 것은 이발소와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미장원을 삼입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